반동적인 자본주의선거제도의 력사적변천

김 히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본주의에 이르는 모든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통치수단으로 하여 국가적지배를 유지하여왔습니다.》(《김정일선집》제10권중보관 140폐지)

부르죠아국가법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인 자본주의선거제도는 여러 단계를 거 쳐 제정, 변천되여왔지만 그것은 철두철미 부 르죠아독재정권수립에 복무하였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자본주의발전의 여러 단계들에서 각이한 양상을 띠고 수립되였다.

무엇보다먼저 자본주의초시기에 수립된 선 거제도는 신분선거제와 재산기준선거제였다.

신분선거제는 사람들의 신분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제도였다. 자본주의 초시기 선거제도가 신분선거제로 되게 된것 은 당시 갓 출현한 착취계급국가인 자본주 의사회내에 신분관계에 기초한 봉건적요소 와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 본주의통치질서가 세워지고있던 사정과 관 련된다. 봉건세력이 아직 적지 않게 남아있 었고 부르죠아지가 자기의 힘으로 봉건통치 질서를 완전히 제거할만 한 힘이 없었던 당 시의 조건에서 그들이 중세의 전통과 관례 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시에 부르죠아독재체 계를 확립하려 한다면 봉건을 유지복귀하려 는 구봉건세력의 이러저러한 반항에 부딪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초시기 선거 제도는 중세정권조직의 전통과 관습을 일정 하게 수용한 신분선거제로 되지 않을수 없 었다.

여기서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였다.

1653년 영국에서 선거권은 당시로서는 대 단히 많은 액수인 200 £에 해당하는 재산소 유자, 년토지수입이 600 £에 해당한 재산소유자, 300 £의 부동산을 소유한자만이 가질수 있게 규정되었다. 이것은 지주를 비롯한봉건세력들에게 많은 정치적권리가 부여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더우기 카톨릭교도들과 아일랜드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선거권을 영원히 박탈당하였다.

영국에서 왕의 권한을 일정하게 제한한 립한군주제시기에도 선거제도는 봉건귀족들에게 유리하게 확립되였다. 영국에서는 1689년의 《권리장전》과 1701년의 《왕위계승령》에서 선거권에 대하여 일정하게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의회에서 귀족계층의 특권과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것이였다. 당시 선거제도에서는 귀족계층이 의회에서 2중대표권을 가지였다. 상원에는 세습귀족들이 들어가고 하원에는 선거를 통하여 귀족의 자손들이나 귀족에게 매여있는자들이 들어갔다.

신분선거제는 신흥부르죠아지들이 사회에 대한 저들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함에 따라 점차 로괄적인 재산기준선거제로 변화되였다.

재산기준선거제는 일정한 재산과 수입을 선거권부여의 기본기준으로 내세우는 선거 제도였다. 신분선거제가 재산기준선거제로 되게 된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부르죠아지 가 봉건세력을 제압하고 단독으로 정치체계 를 확립할수 있는 조건이 일정하게 마련되 였으며 더우기 공장제수공업이 기계제산업 으로 이행하면서 부자와 빈자, 자본가와 무 산자가 명백하게 갈라진것과 관련된다.

당시 부르죠아지들은 재산소유를 선거권 부여의 기본조건으로 내세우고 무산자대중 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1795년 프랑스에서는 헌법 제35조에서 7 000명이상의 주민을 망라하고있는 콤무나(프랑스의 행정단위)에서 그 가치가 지방

의 200로동일가치와 대등할수 있는 수입을 얻는 재산 혹은 농업용토지를 가졌거나 그 가 치가 500로동일가치와 맞먹는 수입을 얻는 주택을 가진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였다.

1814년 프랑스의 부르봉왕조시기 채택된 헌법에서는 선거권을 특권계층에게만 부여하였다. 당시 프랑스의회는 대의원(하원)과 귀족원(상원)으로 구성되여있었다. 대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은 나이가 30살이상으로서 매해 300FF이상의 직접세를 무는자들에게 부여하였다. 의원으로 선출될 권리는 나이가 40살에 달하며 1 000FF이상의 직접세를 무는자들에게 주었다. 이러한 선거제한조건으로 하여 그 당시 선거권을 부여받은 프랑스사람은 겨우 1만 5 000명정도였다.

다음으로 산업혁명시기에 들어서면서 부 르죠아선거제도에서는 일련의 변화들이 일 어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산업혁명시기 산업부르죠아지의 장성과 로동계급의 형성은 자본주의국가기 구조직에서 본질적변화를 가져왔다. 19세기 초에 부르죠아지는 귀족세력을 제압하고 마 침내 국가기구안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 는데 성공하였다. 이로부터 부르죠아지들은 선거개혁을 진행하여 저들의 특권적지위를 합법화하려고 하였다. 부르죠아지들은 일반 적, 평등적원칙에 기초한 선거제도의 수립 을 요구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그것이 더는 무시 할수 없게 되자 그에 편승하여 선거제도를 개 혁하는데로 나갔다.

이 시기 선거제도개혁에서는 우선 재산 상기준과 나이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기준을 적당히 낮추어 형식상 사람들의 선 거권획득자격의 범위를 일정하게 넓히였다. 그러나 복수투표제(한사람이 여러개의 투표 권을 가지는것)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대 표를 선출하는 표수비률에서의 불평등도 여 전히 존재하였다. 자본주의제도의 수립이 서방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미국에서는 19세기말 20세기초에 와서야 선거권에 관한 수정안들이 헌법에 첨부되기 시작하였다. 1889년부터 1908년까지 미국의 모든 주들에서는 련방헌법에 부여된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들을 제정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죠지아주의 《선거제한법》이다. 이 법에서는 거주, 교육자격과 함께 재산조건을 규정하였는데 400ac(에이커)이상의 토지를 가졌거나 혹은 500US\$이상의 세금을 물수있는 재산을 가진자만이 선거에 참가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시기 선거제도개혁에서는 또한 일정 한 나이의 성인남자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 하였다.

1848년 프랑스의 제2공화국헌법에서는 선거가 일반적, 직접적이며 비밀투표의 방 법으로 진행된다고 규정하였지만 녀성들의 선거권은 여전히 박탈하였다.

1875년 프랑스에서 일반선거권을 위한 근로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보통선거권》을 또다시 선포하였으나 여기에서도 녀성들, 군무자들, 프랑스식민지 토착민들, 21살이하의 청년들은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보통선거권》이 발표되였지만 각종 선거제한조치로 선거자명단에 등록된것은 프랑스본국주민의 27%를 못넘겼다.

1871년 도이췰란드헌법 제20조에서는 제국회의선거는 일반적, 직접적, 비밀투표로 진행한다고 하였지만 1869년에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녀성들과 25살이하의 남자들은 여전히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 특히 선거권쟁 취를 위한 대중적투쟁은 자본주의산업혁명 시기에 이르러 더욱 줄기차게 벌어졌다.

대표적인 투쟁은 19세기 30-50년대 영 국에서 일어난 선거법개혁을 위한 챠티스트 운동이였다. 챠티스트란 말은 로동자들이 선 거권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챠터)을 의회에 여러차례 한것과 관련하여 생겨났는데 광범한 로동자대중은 여전히 선거권의 확대를 통하여 자기들의 처지를 개선할것을 기대하였다. 챠티스트의 주되는 요구는 남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며 의회선거를 매해 실시하고 비밀투표와 선거구의 평등을 보장하며 의원으로 선거받는데서 재산적자격설정을 폐기하는것이였다.

정부군의 가혹한 탄압과 영국로동계급의 정치적미숙성으로 하여 차티스트운동은 실 패하였지만 부르죠아반동들은 선거제도에서 일련의 양보와 《헌장》의 몇개 조항들을 수 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1867년 8월 15 일《국민대의제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였는 데 백작령들사이의 대표권의 재분배가 실시 되였으며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범위가 일 정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당시 선거권을 받 은자는 총 인구의 10%를 넘지 못하였다. 도 시들에서 선거권은 부르죠아지들과 로동귀 족에게만 부여되였다. 당시 로동계급은 자 기의 당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선거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르죠아정당의 후보들에게 투표하여야만 하였다.

산업혁명의 마지막시기에 이르러 자본주 의나라들에서는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 성 특히 선거권쟁취를 위한 대중적투쟁으로 하여 선거제한을 완화하게 되였다.

부르죠아지들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회유기만하고 무마시키기 위하여 선거제한을 지난 시기보다 더 완화하면서 성별에 따르는 제한을 비롯하여 일련의 선거참가자격을 형식으로나마 철회하는데까지이르렀다. 그것은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이 독자적인 력량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하고 로동계급의 령도 밑에 자본의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새 사회를 세우려는 인민대중의 투쟁이 전례없이 과감히 전개되였기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부르죠아반동들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거세찬 투쟁기세를 눅잦히기 위한 권모

술수를 선거참가자격을 완화하는데서 찾게 되였으며 그 실제적인 조치로 나이, 성별에 따르는 선거자격제한을 일부 낮추게 된것이 다. 결국 자본주의선거제도에서의 이러한 변 화는 부르죠아반동들의 《관용》에 따르는 정 치적양보인것이 아니라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의 결 과로 이루어진것이였다.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에로 이행 하면서 자본주의선거제도에서는 또다시 일 련의 변화가 일어났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에로 이행하면서 부르죠아반동들은 헌법에 선거의 기본원칙을 요란스럽게 광고하고도 선거의 조직 및 실 시과정에 그것을 무시하는 선거법과 선거규 정들을 제정하여 극히 반동적이며 반인민적 인 선거제도를 확립하였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우선 부르죠아반동 사상만을 절대화하는 사상제한을 확립함으 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선 거에서 배제하고있다.

독점형성후 특히 독점과 국가권력이 하나로 유착된 현대제국주의단계에 이르러 부르죠아반동들은 소수 독점재벌들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정권을 어떻게 하나 유지하기 위하여 저들의 요구와 리익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일체 정치세력들을 선거에서 배제하려는데로부터 정치사상적제한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부르죠아반동들은 개인리기주의로 일관된 부르죠아사상만을 사회에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면서 새로운 시대적사조와 혁명사상이 보급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으며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사상을 가졌거나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정치법률적으로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자본주의헌법에서 《품행자격》으로 위장 된 사상제한의 원칙이 바로 그러한 정치적 탄압과 박해를 법화한것이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또한 선거나이를 높

이 설정함으로써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선거에서 배제하고있다.

미국헌법은 하원의원으로 선거받을 나이를 25살이상, 상원의원으로 선거받을 나이를 30살이상으로 높이 규정하고있으며 대통령으로 선거받을 나이를 35살이상으로, 선거참가나이는 21살로 높이 규정하고있다.

일본선거법에서는 중의원의원과 참의원 의원을 선거할 나이는 20살이상, 중의원의 원과 지방 각급 의회의원으로 선거받을 나 이는 25살이상, 참의원의원과 도, 부, 현의 지사로 선거받을 나이는 30살이상으로 높 이 설정하고있다.

선거나이에 대한 제한조건으로 하여 자본 주의사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선거권을 빼 앗기고 정지적권리행사에서 배제되고있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또한 물질생활령역에서 빈부의 차이를 악용한 선거제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선거에서 배제하고 참다운 인민의 대표가 선거 될수 없게 한다.

자본주의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동적인 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인격적가치는 철저히돈과 재부의 소유정도에 따라 규정된다.

재산제한은 일정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에 참가시키는 제도이다.

자본주의초시기 자본주의선거제도에서 설정되였던 로괄적인 재산제한은 오늘날 우 회적이며 은폐된 형태로 변색되여 실시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거주제한, 지식제한, 직 업제한 등이다.

자본주의헌법이 규제하고있는 로골적인 재산제한과 그 변종인 지식제한, 거주제한, 직업제한 그리고 기탁금제도는 다같이 빈부의 차이를 악용하여 설정된 선거제한원칙으로서 그것은 광범한 근로대중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작용을 한다.

자본주의선거제도는 또한 자본주의사회이 전부터 형성되고 이어져온 낡은 유습에 기 초한 선거제한원칙을 적용하는것을 통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을 선거에서 배제한다.

착취사회의 낡은 유습가운데서 인간의 자주성을 가장 참혹하게 짓밟는 유습은 녀성들에 대한 천대와 멸시, 인종적편견과 차별이다.

오늘 부르죠아반동들이 《비례대표제》와 《다수가결제》를 비롯한 형형색색의 복잡한 선거방법을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일반선거 권이 부여되고있는듯이 열을 올려 선전하고 있는 근본목적은 부르죠아정권이 전국민의 의사에 의해 조직된 《국민대표기관》인것처 럼 묘사하자는데 있다.

선거자격규정에서 정치사상적제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수많은 제한조건으로 광범한 대중을 선거에서 배제하는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경우 련방 및 주법들에 규정된 선거자격제한조건은 무려 60여가지라고 한다.

부르죠아정권은 결코 전국민의 의사에 의해 선거된 정권이 아니다. 그것은 몇몇 독점부르죠아계급에 의하여 조작된 반인민적폭압기구이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유 린말살하는 자본주의선거제도의 반동적본질 을 정확히 인식하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 리 식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 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